

# 근대 초기 회의 규범의 수용과정(1)\*

- 『의회통용규칙』을 중심으로

이 정 옥\*\*

차 례

1. 서론	3. 『의회통용규칙』에 나타난 회의 규칙과 용어의 번역
2. 『의회통용규칙』의 출간 배경과 의회설립운동	4. 결론

국문초록

윤치호의 『의회통용규칙』은 국내 최초의 근대적 말하기 교육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성회와 독립협회를 결성하고 연설과 토론의 대중 교육에 앞장섰던 서재필의 그림자에 가려 전혀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의회통용규칙』에 대한 학문적 조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까닭에 본고에서는 우선 일차적으로 출간 배경과 『의회통용규칙』에 나타난 회의 규칙과 용어가 번역된 양상을 살펴보았다.

『의회통용규칙』은 의회설립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했던

\* 이 논문은 숙명여자대학교 2010년도 교내연구비 지원(1-1003-0130)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

\*\* 숙명여자대학교 교양교육원

1898년 4월에 출간되었다. 이후 『의회통용규칙』은 다양한 매체에서 재수록과 재생산되는 과정을 통해 우리 사회에 회의 규범이 뿌리내리는 단초를 마련했고, 아울러 1907년 신민회를 중심으로 군주제 폐지와 공화국 건설을 통한 국권회복운동이 펼쳐지는 발판이 되었고, 독립투쟁기에 전개됐던 의회정치의 근간을 형성했다는 의의를 지닌다.

윤치호의 『의회통용규칙』은 전 세계적으로 회의 규칙을 보급하는데 크게 공헌한 *Pocket manual of rules of order for Deliberative Assemblies*을 초역한 것으로, 회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방법,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 알아야 할 세부적인 규칙과 규정을 총 7장으로 나누어 담고 있다. 일본에 의해 번역된 근대(translated modernity)를 통해 우회적으로 서구의 문명을 도입하는 중역의 방식을 취했던 당대 대부분의 지식인들과 달리 윤치호는 서구의 원전을 직접 수용하는 직역의 방식을 취했다는 점에서 독보적이다. 이런 점에서 『의회통용규칙』은 일본에 최초로 회의 규칙을 보급했던 후쿠자와 유키치의 『회의변』에 상응되는데, 직역을 택했던 윤치호와 달리 후쿠자와 유키치는 일본의 풍토에 부응하여 서구의 원전이 지닌 뜻을 살리면서도 당시 인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의식적인 의역의 방식을 택했다는 점에서 대조를 이룬다.

『의회통용규칙』은 이후 1910년대 잡지와 신문, 말하기 교육서에 지속적으로 재수록되면서 국민들에게 회의 규범을 널리 보급·확산시키는 역할을 담당했다. 이 과정에서 윤치호의 『의회통용규칙』은 새롭게 각색되고 변주(變奏)되었고, 1919년 독립운동을 기점으로 의회정치가 불붙으면서 회의 규범에 대한 논쟁의 한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다음의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주제어 : 근대적 말하기, 회의 규범, 회의 규칙, 의회통용규칙, 의회설립 운동, 의회민주주의, 공론(公論)

## 1. 서론

근대 초기 지식인들의 최대 관심사는 독립과 문명개화(文明開化)였다. 당대 사회를 ‘천지개벽 이래 대홍수가 범람한 대혼란의 시기’<sup>1)</sup>로 받아들였던 지식인들은, 독립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 문명개화가 시급하다고 생각했다. ‘civilization’의 번역어에 해당하는 문명개화라는 단어에는 ‘서양 문물을 배워 하루 빨리 근대화를 이룩하는 것’이라는 함의가 담겨 있다. 문명개화만이 오직 인민을 살리는 길이라 믿었던 근대 초기의 지식인들은, 정치, 경제, 사회 등 제 분야에서 서구에는 있으나 우리에게 없는 각종 제도와 문물을 도입하고 모방하는 일에 주력했다.

근대적 말하기의 방법을 교육하는 일은 근대적 지식인들이 문명개화를 이룩하기 위한 주력 사업 중 하나로 꼽을 수 있다. 협성회와 독립협회 토론회를 조직하여 연설교육의 대중화에 앞장섰던 서재필이나, 『의회통용규칙(議會通用規則)』을 발간하여 회의 관련 용어와 규칙을 널리 보급했던 윤치호의 행적이 그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최근 들어 근대 초기의 연설에 대한 관심이 일고 있지만, 주로 서재필을 중심으로 계몽 담론을 전달하고 공론을 형성하는 매체로서의 연설의 역할과 기능에 집중되어 있는 편이다. 이로 인해 근대 초기 연설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학문 영역에서 다소 축적되어 있다. 그러나 연설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화자와 청자가 상호 교류하는 방법과 절차 즉, 집회 담화와 그 방식과 체제 등 근대적 말하기의 저변에까지 심도 있게 관심의 폭을 넓혀나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연유로 인해 지금까지도 윤치호의 『의회통용규칙』은 학문적 관심의 사각지대에 매몰되어 있는 실정이다.<sup>2)</sup>

1) 『독립신문』, 1898.11.11

2) 윤치호의 『의회통용규칙』에 대한 논의로는 유일하게 전영우의 『한국 근대토론의 사적연구』(일지사, 1991)가 있다. 이 책은 『의회통용규칙』에 대한 최초의 학문적 관심이라는 의의를 지니지만, 근대 초기 회의규범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의회통용규칙』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로 되지 못하고 근대 토론에 미친 영향이란 측면

본 논문은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윤치호의 『의회통용규칙』을 중심으로 근대 초기 회의 규범의 수용과정을 추적하고 그 의미를 규명하고자 한다. 『의회통용규칙』은 우리나라 최초의 스피치 교육서로 모임(會)을 구성하는 방법, 회원들이 일정한 절차와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는 규칙, 회의에서 사용되는 각종 용어를 도입·정립했다는 의의를 지닌다. 이런 까닭에 『의회통용규칙』은 메이지 초기(1873년)에 일본 최초의 회의 방법과 절차에 대한 교육서인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의 『회의변(會議弁)』에 상응하는 의미를 지닌다. 『의회통용규칙』은 『회의변』에 영향을 받았으면서도 그대로 모방하거나 직접적으로 이식(移植)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았을 뿐더러, 우리의 어법과 사회 상황에 적합하게 회의 용어를 개발하기 위해 고심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회의변』이 도로공사를 앞두고 한 마을에서 펼쳐지는 가상의 회의 상황을 의제로 삼아 회의를 진행하는 방법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산만한 구성을 지니는 반면, 『의회통용규칙』은 회의 절차와 방법을 항목화하여 소개하는 구성 방식을 취했다. 이런 차이점은 일본을 매개로 서구의 문명을 간접적으로 수용하면서도 일본, 중국, 미국, 러시아 등 오랜 시간에 걸친 해외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의 제도와 문물을 조선의 개혁 모델에 직접적으로 원용했던 윤치호의 독특한 행보와 깊은 관련이 있다.<sup>3)</sup>

『의회통용규칙』이 출간된 배경에는 의회설립운동과 깊은 관련이 있다. 1898년에 본격적으로 전개됐던 의회설립운동은 독립협회를 주축으로 펼쳐진 만민공동회의 여러 활동 중의 하나로, 그간 정부의 자문기관으로 자리잡아왔던 중추원(中樞院)에 의회 기능을 부여하여 인민이 직

에서 소개하는데 그치는 한계를 지닌다.

3) 윤치호는 일본에서 2년(1881.5~1883.4), 중국에서 3년(1885.1~1888.9), 미국에서 5년(1888.11~1893.9) 동안 유학했고 러시아에서 4개월간 사절로 체류(1896.4~1897.1)했다. (허동연, 「개화기 윤치호의 해외체험과 문화수용」, 『한국문화연구』 11집, 2006. 149쪽)

접 정치에 참여하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했던 움직임이었다. 의회 설립의 필요성을 전 사회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윤치호는 만국에 통용되는 회의 진행법과 규칙을 널리 보급하고, 아울러 중추원이나 의정부 등의 의사(議事) 규정을 정립하기 위한 목적에서 『의회통용규칙』을 발간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1898년 말 만민공동회의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자 고종은 서둘러 독립협회를 해산하고 중추원의 역할을 대폭 축소했다. 이에 따라 의회설립운동의 열기 역시 급격하게 식어갔고, 1900년대 초반에 들어 중추원이 파행적으로 운영되면서 의회설립운동은 소강상태로 접어들었다. 하지만 1900년대 중반에 이르러 『대한자강회월보』(1906)를 비롯하여 『사회승람』(1908)이나 『경남일보』(1910), 『연설금식사법(演說及式辭法)』(1920) 등의 잡지와 신문, 연설교육서 등에 『의회통용규칙』이 지속적으로 재수록되면서 국민 대중들에게 회의 규범을 널리 보급·확산시키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각종 매체와 각종 모임을 통해 윤치호가 『의회통용규칙』에서 애초에 사용했던 회의 용어와 규범은 수정되거나 새롭게 각색되고 변주(變奏)되는 현상이 일어났다.

이처럼 『의회통용규칙』은 근대적 의회 설립의 초석을 담당했을 뿐 아니라, 근대적 말하기의 형성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위상을 차지한다. 그러므로 『의회통용규칙』의 출간 배경은 물론 근대 초기 회의 규범 정립의 단초를 제공했던 ‘의회통용규칙’이 갖는 특성과 의미를 밝히고, 또한 이를 토대로 근대 초기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회의 규범이 번역·수용되고 재생산되는 과정을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처럼 『의회통용규칙』이 지닌 가치와 의미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에 대한 연구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필자는 『의회통용규칙』을 중심으로 근대적 회의 규범이 수용되는 과정에 대해 여러 편의 논문으로 나누어서 고찰하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 출발점에 해당하는 본고에서는 의회설립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됐던 1890년대 말 그 출간을 둘러싼 사회문화적 배경과 회의 용어 및 규칙이 번역되는 양상을 밝히는 작업에

충실하고자 한다. 먼저 2장에서 『의회통용규칙』의 출간된 배경과 회의 규범이 이입된 사회문화적 경위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3장에서는 『의회통용규칙』에 실린 회의 규칙 및 용어의 번역을 중심으로 서구의 회의 규범이 도입되는 양상을 고찰하고자 한다.

## 2. 『의회통용규칙』의 출간 배경과 의회설립운동

『의회통용규칙』은 황성신문사에서 1898년 4월 초에 첫 출간된 것으로 추정된다. 1898년 4월 12일자 『독립신문』광고란에 “탄하 만국이 의회하는 통용규칙을 미국 학스 라베츠씨가 만들고 대한 전 협판 윤치호씨가 번역 하여 박혀 파오니 의회하는 규칙을 비호고즈 하는 이들은 독립신문사로 와서 사다가 보시오”라는 글귀가 최초로 기재된 것으로 미루어 최초의 출간일을 짐작할 수 있다.<sup>4)</sup>

『의회통용규칙』의 출간은 1898년에 전개됐던 의회설립운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의회설립운동은 당시 독립협회의 부회장으로 활동했던 윤치호가 서재필 등과 함께 언론의 자유를 쟁취하고 나아가 의회식 중추원을 법제화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의회 개설의 필요성을 전사회적으로 확산시켰던 운동이다. 윤치호를 비롯한 독립협회는 『독립신문』에 여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의회 설립을 촉구하는 논설을 지속적으로 실어 사회적 이슈로 부각시켰고, 독립협회 내의 토론회를 통해 ‘의회원을 설립하는 것이 정치상에 데일 요무로 결당함<sup>5)</sup>과 같은 주제를 연설에 부치는 등 다각도로 국민들을 향한 계몽운동을 꾸준하게 펼쳐나갔다. 또 이에 그치지 않고 고종에게 의회원 설립을 제안하는 상소문을 올리는

4) 현재 1898년에 출간된 초본은 찾을 수 없고, 1908년에 출판된 것이 유일하게 남아 있는 상태라 본고에서는 이를 텍스트로 삼았다.

5) 『독립신문』, 1898.4.9

등의 정치적인 활동도 병행했다.

나라마다 인민들이 모히는 처소가 있어서 여럿이 규칙 있게 모여 정대하게 만사를 토론하여 좌우편이 이악이를 다 드른 뒤에 작정한 의론이 공론이라 이런 공론 하는 인민들이 잇슬것 같으면 정부에서 일하기도 쉽고 또 하는 일을 그릇칠 리가 업는지라 대한 관인들이 국사를 그릇드리라고 짐짓 하는 사름은 업슬듯 하나 그릇치는 일이 만히 잇는것은 공론을 몰으고 다민 한 두 사름의 말만 듣고 하는고로 랑피를 만히 보고 또 규칙이 업서 의론을 흐거드면 공변된 말을 드를 수가 업는고로 나라마다 각식 회가 잇서 회에서 규칙 있게 의론 하여 작정한 일은 대개 공변될 밧기 수가 업고 여럿이 의론하여 작정한 한 사름이나 두 사름의 쇼견으로 작정한 것 보다 랑피성이 업슬터이라<sup>6)</sup>

이는 같은 해 2월 『독립신문』에 실린 논설로, 인민들이 참여한 공론의 중요성을 강조한 글이다. 공론이란 ‘인민들이 모여 규칙 있게 의론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에 근거하여 국사를 도모하게 되면 일을 그르치어 낭패를 보는 일이 없게 된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다.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규칙 없이 의론을 하게 되면 공변된 말을 들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각종 모임(會)에서 인민들이 모여 소견을 나눈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공론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회의 규칙과 절차에 따라 ‘정대하게 만사를 토론하여 좌우편의 의견을 들은 후에 작성한 의론’만이 공론이라는 점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엿보인다. 이처럼 공론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집회 담화의 체제’에 맞추어 의론하는 방법을 갖춰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끝의 직무는 각식 생각과 의사를 내게 하였시며 입을 주어 속에 잇는 생각을 음성으로 타인의게 전하게 하였시며 슈족을 주어 끝에서 나는 생각을 시형케함이라 -중략- 세계 기화 각국이 정부를 조직 하였는디

6) 『독립신문』, 1898. 2.24. 논설

각식 일을 생각 해야 의사와 경영과 방침을 생각 하여 내는 관원들이 있고 그 생각을 시행 해야 세상에 드러나게 하는 관원들이 있는지라 생각하고 방침 내는 마음을 외국서는 말하되 의회원이라 하며 의회에서 작정한 방침과 의사를 시행하는 마음을 니각이라 하는것이라 -중략- 대 한도 초초 일당 규모를 정부에 세워 이 혼잡 하고 규칙 업는 일을 업세 라면 불가불 의정원이 따로 잇서 국중에 그중 학문 있고 지혜 있고 조 혼 생각 있는 사람들을 뽑아 그 사람들을 행정하는 권리문 주지 말고 조 혼 생각과 조 혼 의론을 놀마다 공평 하게 토론 해야 리히 손익을 공 변되게 토론 하여 작정 해야 대황제 폐하씨 이 여러 사람의 토론 하여 작정한 뜻을 품어야 지기를 무른 후에는 그 일을 니각으로 넘겨 니각서 그 작정한 의사를 가지고 규칙대로 시행민 할것 ㄹ하면 두가지 일이 전 슈히 되고 니각 안에 분잡한 일이 업슬터이라<sup>7)</sup>

의회설립운동의 궁극적 목표는 의회민주주의의 실현에 있다. 의회민주주의를 한 마디로 ‘국가 차원에서 집회 담화의 체계를 갖추어 공론을 형성하는 정치’라 정의하고 있으며, 국가 조직을 인간의 신체구조에 비유하여 한시 바빠 의회민주주의로 전환해야 할 당위성을 설득하고 있다. 인체 구조상 ‘생각과 의사를 내는 골’과 ‘골에서 나는 생각을 시행하는 수족’이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정부 역시 ‘의사와 경영과 방침을 생각해내는 의회’와 ‘의회에서 작정한 방침과 의사를 시행하는 내각’을 분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명개화한 서구 각국에서 국가의 운영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까닭은 ‘의회와 내각을 분리하여 정부를 조직하는데 있으니, 이를 본받아 우리도 내각과 의회를 구분하여 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내각에서 집행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처럼 의회민주주의의 체계를 갖추면 황제도 국책 결정에 편리할 뿐 아니라 인민의 주장도 잘 반영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혼란에 빠진 당시의 국가를 위기로부터 구하기 위한 방편으로 ‘학문과 지혜와 좋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뽑아’ 의회를 구성하여 ‘좋은 생각과 좋은 의론을 공평

7) 『독립신문』, 1898.4.30. 론설

하게 토론하고 이해손익을 공변되게 토론하여 이를 내각에 넘겨 규칙대로 시행하는 제도를 갖추자'고 제안하고 있다.

此一用一去之間 必遵國人議之者也 且近日歐洲列邦 雖專制之治 設上下議員 以諮諫國是 廣問言路 -중략- 伏願聖上 旁求俊彥 俯循輿情 大小政令 上自百僚 下至庶民 廣詢博採 措諸施爲 則萬民幸甚 天下幸甚<sup>8)</sup>

윤치호 등은 이렇게 『독립신문』등을 통해 여론을 부각시킬 뿐 아니라, 위의 인용문과 같이 고종에게 직접 상소문을 올려 '중추원을 개편하여 의회원 설치'를 제안하는 정치적 활동도 병행했다. 상소문의 내용은 독립협회를 설치한 본의(本意)와 당시 정치가 바로 서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더불어, '현량(賢良)한 사람을 선택하여 각자에 적합한 직책을 맡기면 정치가 다시 흥할 것이라'는 간언(諫言)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서구의 여러 나라에서 비록 전제정치를 하더라도 상하의원을 두었기에 국가 시책을 자문하거나 언로를 개방하는 체제가 갖추어졌다'는 점을 들면서, '고종께서도 국정을 운영할 때 위로 관료에서부터 아래로 서민에 이르기까지 두루 의견을 묻고 국정을 제정하게 되면 만민이 행복하고 천하가 행복할 것이라'고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의 주요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후쿠자와 유키치정치 체제를 갖추자는 윤치호 등의 상소에 대해 고종은 '분수에 벗어나는 논의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이에 굴하지 않고 독립협회를 중심으로 같은 해 7월 11일에 또 다시 의회 설치를 촉구하는 상소문을 올렸고, 국정 개혁과 의회 설립을 주장하는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갔다. 의회설립운동의 열기가 좀처럼 사그러들지 않자 마침내 10월 24일 고종은 중추원을 의회식으로 개편하고 독립협회 회원 중에서 윤치호 등을 포함한 40명을 의관(議官)

8) 「中樞院 一等議官 尹致昊 等 上疏」, 『承政院日記』, 高宗 光武 2年 7月 3日條

으로 임명하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독립협회는 중추원을 개편하는 정도에 그치는 절충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인민들도 이에 호응하여 10월 28일부터 11월 2일까지 종로에서 독립협회와 인민들이 합심하여 ‘만민공동회’라는 이름 아래 명실상부한 의회 개설을 요구하는 대대적인 시위를 벌였다. 이처럼 의회 설립을 열망하는 열기가 전국적으로 뜨겁게 달아오르자 11월 4일 고종은 마침내 중추원을 관제화하고 25명의 민선의관(民選議官)을 독립협회에서 선출한다는 결정을 내렸다.<sup>9)</sup>

짐이 민회일로 써 비로쇼 칙유를 나란지라 만일 혹 군준흔 무리가 두려운줄을 아지 못 하고 다시 전습을 뵈아 열과 닷섯식 가로에 취슈하야 장초 회를 이르고자 호는자는 그 파슈 순검과 순찰 병영으로 호야금 도저히 규찰 호야 곳 엄금 하고 또 려항에 한산흔 빅성들이 방청이라 일컷코 에워서서 보는자를 호흔 금단 하고 그 므외 잡류가 부상이라 자탁 하고 흥지가 섬홀흔 자를 일체히 엄히 막을 뜻으로 니부와 군부에 효유 호라 하옵섯더라<sup>10)</sup>

그러나 보수 세력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독립협회를 비롯하여 만민공동회에 참가했던 모든 민회(民會)에 대한 강제 해산 명령이 내려졌다. 1898년 12월 27일 발표된 ‘민회 규칙’에 따라, ‘다섯이나 열 명 정도 소규모의 인원이라도 가로에 모여 회합을 하거나 방청을 하는 모습이 포착 되면 즉시 현장에서 체포한다’는 엄포와 함께 민회 전면 금지가 선포되었다. ‘민회 규칙’이 발효됨에 따라 자연 의회설립운동도 좌절되었다. 비록 의회설립운동은 실패로 끝났다 하더라도, 1907년에 창건된 신민회(新民會)가 군주제 폐지와 ‘국권회복의 새나라가 처음부터 공화국으로 건설되어야 한다’는 목표를 갖게 만든 근간이 되었고, 독립투쟁기에 달아오

9) 신용하, 『독립협회연구』, 일조각, 1976. 361-377쪽

10) 『독립신문』, 1898.12.18. 관보

른 의회정치 논쟁에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sup>11)</sup>

이처럼 의회설립운동은 1898년에 본격적으로 전개되었지만, 보다 넓은 시각에서 서재필이 협성회를 조직했던 1896년부터 이미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민회 강제 해산 명령에 해당하는 ‘민회규칙’에 따르면 민회의 범위에 만민공동회에 참여한 모든 단체라 하였으니 독립협회는 물론 협성회 역시 만민공동회에 참가했으므로 민회의 성격을 지닌다.

비지학당 학도들이 학원 중에서 협성회를 일주일에 한번씩 모아 의회원 규칙을 공부하고 각색문제를 내어 학원들이 연설공부를 한다니 우리는 뜻기에 넘으 즐겁고 이 사람들이 의회원규칙과 연설하는 학문을 공부해야 조선 후생들에게 선생들이 되어 만사를 규칙이 있게 의론하며 중의를 좇차 일을 거처하는 학문들은 퍼지게하기를 바라노라.<sup>12)</sup>

서재필은 원래 중추원의 고문관으로 복무하기 위해 귀국했으나 열강의 침략 앞에 무기력한 정부에 실망하여 평민들을 대상으로 대중교육을 펼칠 결심을 하고 배재학당에 협성회를 조직했다. 협성회가 조직된 직후에 쓰인 위의 글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협성회에서는 매주 토요일 배재학당의 학생들과 관리들을 대상으로 회의 규칙과 회의 방법 뿐 아니라 당대 사회에서 이슈로 떠오른 문제들을 주제삼아 연설과 토론하는 방법을 체계적으로 교육했다. 서재필이 이처럼 협성회를 조직하여 학생들과 관리들을 대상으로 회의 규범과 더불어 연설 등의 근대적 말하기 교육을 시행했던 목적은 “조선의 후생들에게 만사를 규칙 있게 의론하고 중의(衆議)를 따라 일을 도모하는 학문을 널리 퍼지게 하기 위함”이며, 나아가 이를 발판으로 삼아 “장차 국회를 삼으려는 전제로서 중추원을 두었던 것이며 대의원(代議員)을 양성하려는 의도”<sup>13)</sup>에 있었다. 협성회는 처

11) 이병화, 「한국근대의회의 기원과 발달에 관한 연구」, 『부산여대 논문집』26집, 1988. 140쪽

12) 『독립신문』, 1896. 12. 1. 잡보

13) 『배재 80년사』, 배재학당, 1965. 196쪽

음에는 13명의 학생으로 소박하게 출발했으나 1년 만에 참여 인원이 200 여명으로 늘었고 이에 영향을 받아 독립협회가 설립되었고, 독립협회는 의회설립운동의 중심 세력이었으니 협성회 조직은 곧 의회설립운동의 첫걸음에 해당한다.

徐載弼 박사가 우리 학교에 와서 일주일에 한 번 씩 학생들을 모아놓고 강연을 하였습니다. …… 중략 …… 비로소 民主主義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중략 …… 또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일을 하게 되면 會議을 해야 하는데. 會議가 무엇인지 알 까답이 있나요. 그러나 會議라는 게 있어야 한다고 해서 학생들이 …… 協成會라는 것을 조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會議를 할 줄 알아야지요? …… 그래서 먼저 言權을 얻으려면 會長을 불러서 言權을 얻은 후에 나서서 말을 하게 되고 意見이 있으면 動議라는 것을 하게 되고 또 再請이라는 것을 해서 …… 舉手可決을 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안에서는 처음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사회에서 유력한 이들이 방청을 왔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고 구경을 왔습니다. …… 얼마 후에 그들이 나가서 큼직스럽게 獨立協會라 하는 것을 조직하게 되었습니다.<sup>14)</sup>

협성회(協成會)의 주최로 연설회(演說會)를 열고서 그때 정부(政府)의 고문관(顧問官) 서재필(徐載弼)박사와 윤치호(尹致昊)박사를 초청하여 연설회를 열었다. 윤치호씨는 미국에 유학(留學)하여 밴드빌트 대학(大學)을 마치고 5년만인 1893년 11월에 귀국하여 배제학당의 대학부(大學部)의 천문학(天文學)을 강의하였고 학당의 역사(歷史) 시간을 맡아 가르쳤다. 연설의 내용은 언제나 민주정치(民主政治)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며 “조선(朝鮮)은 어디로 가느냐?”하는 연제(演題)를 내어 걸고 윤치호 박사의 연설이 있었으면 샘솟듯 하는 개화사상(開化思想)은 그들의 연설 한 마디 한 마디가 귀에 헛들어 들리지 않았다. 서재필 박사는 한국이 아직도 깨지 못한 것과 미국의 민주주의와 국회제도(國會制度)에 대한 연설을 하였다.<sup>15)</sup>

14) 전택부, 『人間 申興雨』, 대한기독교서회, 1971. 44-45쪽

15) 『배제 80년사』, 배제학당, 1965. 212쪽

위에 제시한 글은 모두 협성회에서 활동했던 배재학당의 학생들이 당시 상황을 회상한 것이다. 위의 글에는 당시로서는 매우 낯설었던 회장을 불러 연권을 얻은 다음 발언을 하는 방법, 동의하거나 재청하는 방법, 거수로 의결을 결정하는 방법 등의 회의 규칙과 회의에서 사용하는 각종 용어들을 처음으로 배우는 광경이 선하게 그려져 있다. 또한 아래의 글에서는 서재필이 단독으로 협성회를 조직하고 말하기 교육을 전담했던 것<sup>16)</sup>이 아니라 윤치호도 이 과정에 깊이 관여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준다. 또한 윤치호와 서재필이 협성회를 조직하고 말하기 교육을 실행했던 궁극적인 목적이 의회 설립과 민주주의의 실현에 있었음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각종 모임(會)을 만들어야 하고 모임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회의하는 방법을 익혀야 하기에, 서재필과 윤치호는 배재학당의 학생들과 관리들을 대상으로 회의 규칙과 토론과 연설의 방법 등을 교육했다.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국회를 만들고 미국과 같은 의회민주주의를 실현하기를 꿈꾸었던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회통용규칙』의 출간은 의회설립운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근대 초기 의회설립운동은 1896년 협성회 조직에서 시작되어 1898년 만민공동회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비록 정치적인 이유에서 좌절됐지만 인민이 연합하여 만든 만민공동회를 중심으로 철저하게 민주적인 방식으로 전개됐던 의회설립운동은 국내 최초로 이루어진 근대적 민주주의 정치운동이었다는 의미를 지닌다.<sup>17)</sup> 또한 『의회통용규칙』은 국내 최초의 의회 규칙을 정리한 근대적 말하기 교육서로, 「중추원 의사규칙」(1899)과 「의정부회의규정」(1904) 등이 만들어지는 기초를 제공했다는 역사적인 의미를 지닌다.

16) 김동면의 「협성회 연구」(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0), 정명숙의 「서재필의 화법지도와 실천에 관한 연구」(한국외대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9. 8.), 이황직의 『독립협회, 토론공화국을 꿈꾸다』(프로네시스, 2007) 등이 여기에 속한다.

17) 유영렬, 『애국계몽운동 I - 정치사회운동』,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7. 199쪽

### 3. 『의회통용규칙』에 나타난 회의 규칙과 용어의 번역

앞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회의 규칙과 용어는 『의회통용규칙』을 통해 본격적으로 이입됐다. 그 이전에 우리 사회에 회의 규칙과 용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에 해당하는 현실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우리에게 낯설어 전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서구의 문명을 수용하여 그에 상응하는 말을 우리의 언어로 번역하는 일은 결코 만만치 않은 작업이다. 언어란 단지 전달의 수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간의 공유성과도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근대 초기의 지식인들 대부분은 우리보다 20 여년이나 앞서 서구의 문명을 번역했던 일본의 경험을 그대로 중역(重譯)하거나 번역어를 수용하는 손쉬운 방안을 택했던<sup>18)</sup> 배경도 여기에 있다.

대대 오늘날 한국사람들이 일본을 문명수입하느니 데일 갖잡고 데일 편리한길노 아는자가 만흐나 그러나 더 일본은 놈을 모방한자에 지나지 못하니 그럼으로 문명의 근원을 좇고져할진디 구라파와 아메리카의 문명을 수입지아니함이 불가하며 더 일본은 아즉까지도 유치한 시대에 잇는자라 그럼으로 로실한 문명을 모범코져할진디 구라파와 아메리카의 문명을 수입지 아니함이 불가하며 더 일본은 구라파와 아메리카의 문명을 모방한디 그나라 형편에 덕당하도록 모방하여 쓰는거시만커늘 한국인이 이거늘 수입하면 터럭만치 틀닌거시 천리만치 어긋여짐을 면치못하리니 그럼으로 문명을 진경으로 수입하고져할진디 구라파와 아메리카의 문명을 수입지 아니함이 불가하고 또 오늘날 한국사람이 되여서 문명을 성심으로 전수하기를 전혀 일인에게만 브랄바아니라<sup>19)</sup>

위의 글을 통해 근대 초기 대부분의 지식인들이 일본을 통로삼아 서

18) 정선태, 「근대개봉기의 번역론과 번역의 사상」, 한기형 외, 『근대어·근대매체·근대문학』,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6. 58-59쪽

19) 『대한미일신보』, 1910.4.10. 른설

구의 문명을 우회적으로 받아들이고 일본식 번역어를 그대로 중역(重譯)했던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추세에 대해 개탄하는 필자는 ‘일본의 번역어는 일본의 형편에 맞도록 변형한 것이어서 우리의 형편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문명적으로 일본은 아직도 유치한 시대에 있다’고 전제한 뒤, ‘노실한 서구의 문명을 우리에게 맞게 수입하려면 일본을 거치거나 일본식 번역어를 그대로 수용하지 말고 구라파나 아메리카의 문명을 직수입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당시 사회상에 비추어보면 후쿠자와 유키치가 번역한 회의 용어를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서구 문명의 원전을 충실하게 이식하고자 했던 윤치호는, 우리에게 낯선 한자식 일본 번역어를 거부하고 우리 어법에 맞는 용어를 개발하기 위해 고심했던 독보적인 존재라 할 수 있다. 그는 일본, 미국, 러시아, 중국 등을 오가며 다양한 문물을 경험했고, 미국 공사관 직원(J. B. Bernaden)에게 영어를 직접 배우는 등<sup>20)</sup> 오랫동안 영어를 공부했으며 미국에 5년 남짓한 기간 체류했던 경험에서 형성된 상당한 영어 실력을 바탕으로 일생 동안 영어로 일기를 썼던 독특한 이력을 지닌 인물이다.

윤치호는 이런 이력을 바탕으로 Henry M. Robert의 *Pocket manual of rules of order for Deliberative Assemblies*를 직접 초역(抄譯)하여 한국 최초의 말하기 교육서인 『의회통용규칙』을 발간했다. 이 원본은 1876년에 미국 시카고에서 처음으로 출간된 이래 여러 번의 증보판을 거쳐 전 세계적으로 회의 규칙 보급에 크게 공헌한 책이다. 미국 대학에서 수학하는 동안 각종 학회와 토론회에 참가했고 대학 토론회의 회장이 되어 회무(會務)를 주관하는 등의 활동을 했다는 기록<sup>21)</sup>에 따르면,

20) 『일기』, 1884.4.5.

21) 윤치호는 1888년 10월부터 시작된 미국 밴더빌트(Vanderbilt) 대학 시절에 문학회, 논리학회, 철학회 등 다양한 서클의 토론회에 참여했고, 연설대회에 연사로 참가하였으며, 1891년 7월부터 시작된 에모리(Emory)대학 시절에는 조지아주 YMCA 집회에 연사로 참석하였고 교내 토론회(Few Society)의 회원과 회장으로 활동하였다. (윤치호, 박정신 역, 『국역 윤치호일기 2』, 연세대학교출판부, 2003. 392-409쪽)

당시 이 책을 직접 구입했을 개연성이 크다.

『독립신문』에 실린 광고문에는 ‘미국 학사 라베츠씨가 만든 것을 윤치호가 직접 번역한 것’<sup>22)</sup>이라 했다. 그러나 여기에 실린 회의 용어까지 윤치호가 전적으로 새롭게 번역한 것으로 간주하기 어렵다. 윤치호는 미국 유학에 앞서 일본에 유학했던 시기에 당대 일본 최고의 사상가이자 연설과 토론, 회의 등 근대적 말하기를 도입하는데 앞장섰던 후쿠자와 유키치의 영향을 크게 받았고, 그가 운영하는 게이오의숙(慶應義塾)의 미타(三田)연설회에 직접 참관하여 큰 감동을 받았었다.<sup>23)</sup> 또한 미국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이후에는 서재필과 함께 협성회에서 근대적 말하기 교육을 실행했고,<sup>24)</sup> 독립협회 내에 토론회를 결성(1897.8)하고 「독립협회 토론회규칙」을 작성하는 일에도 관여했다.<sup>25)</sup> 이와 같은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면 『의회통용규칙』에 실린 회의 용어들은 「협성회규칙」(1896)과 「독립협회 토론회규칙」(1897)에서 사용한 용어들을 그대로 수용하는 한편, 『회의변』에서 후쿠자와 유키치가 사용했던 용어들을 부분적으로 차용했다는 추측이 가능해진다. 이처럼 『의회통용규칙』의 번역은 영어와 일본어, 한국어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이루어졌다. 따라서 『의회통용규칙』에 실린 회의 규칙과 용어의 양상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Henry M. Robert의 *Pocket manual of rules of order for Deliberative Assemblies* <sup>26)</sup>, 『회의변』, 「협성회규칙」과 「독립협회 토론회규칙」에 실려 있는 회의 규칙 및 용어들과의 비교를 통해 어떤 식으로 수용 또는 변용했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다.

22) 『독립신문』. 1898.4.12.

23) 윤치호, 박정신 역, 『국역 윤치호일기 1』, 연세대학교출판부, 2001. 7-16쪽

24) 『배재 80년사』, 배재학당, 1965, 212쪽

25) 『日記』, 1897.8.5, 8.29. 『독립신문』, 1898.7.20

26) 현재 국내에서 발견된 가장 빠른 판본은 1880년과 1894년의 것이나, 전권 공개를 꺼리는 풍토로 인해 목차만을 복사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1951년 Robert, Henry M.이 편집한 *Robert's Rules of Order Revised* 를 참조하는 방식을 취하고자 한다.

*Pocket manual of rules of order for Deliberative Assemblies*은 의회 규칙과 실무를 중심으로 회의하는 방법과 규칙을 정리한 소책자이다. 크게 3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1부에서는 의사일정에 대한 소개, 동의를 종류, 동의를 우선순위, 위원회와 비공식 활동, 토론과 예절, 투표, 임원과 의사록, 기타 잡무 등 주로 의회규칙을 중심으로 한 의회 규칙을 정리했다. 2부는 조직과 집회, 임원과 위원회, 동의 등 각종 집회의 의사(議事) 조직과 운영방법을, 3부에서는 기타 잡무를 다루고 있다. 『의회통용규칙』은 주로 원본의 2부에 실린 내용을 발췌·요약하여 총 7장으로 재구성되어 있다. 1장은 회를 조직하는 순서, 2장은 장정 세칙, 3장은 임원의 직무와 권리 등으로 주로 회합의 조직과 관련된 규정을 싣고 있다. 4장은 동의·제청·투표법, 6장은 위원 천거법, 7장은 규칙 회의 진행 규칙에서 알아야 할 사항 등 회의 실무에 관한 규정이 실려 있다. 전체적인 특징은 회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방법,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 알아야 할 세부적인 규칙과 규정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데 있다. 이런 특징은 서구의 스피치 서적 중 여러 권을 참조하여<sup>27)</sup> ‘타카세(高賴村)’라는 마을의 도로공사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가상의 회의 상황을 재현하는 방식을 통해 집회를 만드는 절차에서부터 임원 선발의 방법, 회의 진행 방법, 동의와 제청 등의 낯선 회의 용어를 활용하는 방법 등을 상세하게 소개하는 식으로 구성된 『회의변』과 대조를 이룬다.

『의회통용규칙』의 1장에 실려 있는 내용은 ‘會를 組織하는 次序’로, 『회의변』의 ‘집회를 일으키는 수속’의 앞부분과 유사하다. 회를 설립하기 위해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모인 회합(meeting)에서 회를 조직하고 임원을 선출하는 일련의 과정을 설명한 것이라 거의 차이가 없다. 본회를

27) 松崎欣一에 따르면 『회의변』은 홀레데릭·로-톤의 *The debater*를 축으로 삼고 르페 캣싱의 *Manual of Parliamentary Practice*와 레지날도·파르그레-브의 *The Chairman's Handbook*을 참조하여 만들었다고 한다. (松崎欣一, 『三田演說會と慶應義塾系演說會』福澤研究センター叢書, 慶應義塾大學出版株式會社, 1984. 100쪽)

결정하기 전에 먼저 회를 설립하려는 뜻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일단 임시 회장과 서기를 선출한다. 이때 임시 회장은 동의와 재청을 거쳐 가부(可否)의 득표수에 따라 선출하고, 서기는 임시 회장이 회원들의 공천을 받아 결정한다. 임시 회장단이 결정된 후 임시 회장이 회의 설립 목적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동의와 재청을 거쳐 본회 조직을 결정하여, 장정(章程) 위원 5인(혹은 3인)을 선정한다. 장정 위원들은 장정과 세칙의 기초(起草)를 만드는 사람들로, 다음 회에서 장정을 정할 때에는 우선 장정 위원들의 기초를 보고한 후, 이 장정과 세칙의 각 조의 내용을 하나씩 순서대로 낭독한 다음 회장이 이에 대해 회원들의 가부를 물어 그 득표수에 따라 결정한다. 만약 가감 또는 개정의 의견이 제기되면 다시 공천과 투표를 통해 영구 임원을 선정한다. 이 모든 과정은 반드시 동의와 재청을 거쳐 가부의 득표수에 따라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회의 규칙면에서는 『의회통용규칙』과 『회의변』이 거의 동일하지만, 회의 용어에서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우선 ‘동의(動議)’와 ‘재청(再請)’, ‘가부(可否)’, ‘회원’, ‘의안(議案)’ 정도만 양쪽 모두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다. 동의는 ‘motion’, 재청은 ‘second motion’, 가부는 ‘agreement’와 ‘opposition’, 회원은 ‘member’, 의안은 ‘bill’에 해당한다. 그에 반해 회(會) 조직을 기획하는 자에 대해 『의회통용규칙』에서는 ‘뜻을 같이 하는 모든 사람’이라는 의미의 ‘동지 제인(同志諸人)’이라 했는데, 이는 원본의 ‘Those who are responsible for the call should consult together’<sup>28)</sup>를 직역한 것이다. 『회의변』에서는 이에 상응하는 단어를 ‘발기인’이라 했고, 이 외에도 ‘논의를 시작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발언자’, ‘발언자의 생각을 도와 새롭게 첨가 발언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의 ‘차첨인(差添人)’ 또는 ‘배언인(陪言人)’, ‘집회에 초청한 취지를 회석(會席)에서 연설하는 사람’이란 의미의 ‘피로인(披露人)’ 등의 단어를 새롭게 만들어 번역했다.

28) Robert, M. Henry, *Robert's Rules of Order Revised*, Chicago : Scott, Foresman and Co. 1951. p.275

그러나 『의회통용규칙』에서는 ‘발언자’와 ‘차점인’에 상응하는 단어로 ‘동의하는 사람’ 혹은 ‘재청하는 사람’이라 했다. 이는 원본의 ‘first speaker’ 혹은 ‘second speaker’를 그대로 직역한 것이다.

임원의 명칭에 있어서도 『의회통용규칙』과 『회의변』은 상당히 다르다. 『의회통용규칙』에서는 ‘임원’으로 ‘회장’, ‘서기’, ‘회계’를 둔다고 했다. 이는 ‘officers’, ‘chairman’, ‘secretary’, ‘clerk’에 해당하는 단어들로, 이미 ‘협성회규칙’과 ‘독립협회 토론회규칙’의 용어를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반면에 『회의변』에서는 임원에 상응하는 단어를 ‘역인(役人)’이라 했고, 각각 ‘회두(會頭)’, ‘기사관(記事官)’, ‘출납관(出納官)’이라 하였다. 또 회의 규칙에 관한 명칭에서도 『의회통용규칙』에서는 회의 이름과 그 목적, 임원의 수효와 직무, 선거법, 회원의 자격과 임기, 회기 등을 다룬 것을 ‘장정(章程)’이라 하고, 회중 사무를 적절하게 항목화 하여 기록한 것을 ‘세칙(細則)’이라 했다. 이는 원본의 ‘constitution’과 ‘by-laws’를 번역한 것으로, 오늘날 ‘회칙’이나 ‘세부 조항’에 해당한다. 이에 비해 『회의변』에서는 집회의 취지와 임원의 직분을 다루는 ‘憲法(헌법)’, 집회의 기구와 가입과 탈퇴의 수석이나 집회의 기한 등을 기록한 것을 ‘부례(附例)’, 회의석상에서 일어난 일을 항목 별로 기록한 것을 ‘식목(式目)’이라 했다. 개념상으로 보면 ‘장정’은 ‘헌법’과 ‘부례’를 합친 것이고, ‘세칙’은 ‘식목’과 동일하다. 윤치호가 오늘날에도 익숙한 ‘헌법’을 선택하지 않고 ‘장정’이란 단어를 택한 까닭은 당시 근대국가 건립의 근간에 해당하는 근대법이 소개되면서 ‘헌법’은 ‘입헌국의 근본으로 통치권 작용의 분류와 입헌국의 필요에 따라 기관조직의 권한을 정한 것’<sup>29)</sup>이라는 의미로 전환되었기에 이와 차별화하기 위해 선택한 용어라 짐작된다.

『의회통용규칙』의 또 다른 특징은 『회의변』이나 ‘협성회규칙’, ‘독립협회 토론회규칙’과 달리 투표법, 동의를 속결하는 방법, 다양한 위원을 천거하는 방법에 대해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는 점에 있다. 『의회통용규

29) 곽한택 역, 『헌법 속』, 『태극학보』제 7호, 1907.2. 23쪽

칙』은 소규모의 회의뿐 아니라 의회처럼 규모가 큰 모임에 적용되는 회의 규칙까지 염두에 두고 있지만, 『회의변』이나 「협성회규칙」, 「독립협회 토론회규칙」은 모두 소규모의 회의를 염두에 두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아주 소략한 편이다.

투표하는 방법에는 ‘가부표성(可否票聲, vote by the voice)’, ‘가부표결(可否票決, vote by the hands)’, ‘밀표(密票, vote by ballot)’가 있다. 가부표성은 의안에 대한 동의와 재청이 있을 후에 회장이 회원들에게 찬성이나 반대의 의견을 자유롭게 진술하도록 한 다음, 지지가 많은 쪽으로 결정하는 방법이다. 이때 가부의 결정이 분명치 않으면 회장이 재표(再票)를 청하여 가부에 따라 기립하도록(또는 손을 들도록) 하여 그 수에 따라 의안을 결정하는 방법이 곧 가부표결이다. 반면, 밀표는 의안에 대한 논의과정이 없이 곧바로 회원들에게 투표 용지를 나누어 주고 가부를 표하도록 한 다음 투표 용지를 수거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는 비밀투표를 말한다. 주목을 끄는 대목은 이러한 투표 방식을 처음 접하는 인민들에게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 투표 결과를 표기하는 예를 그림으로 그려 상세하게 설명한 부분이다. 즉, 가의 수가 15일 경우에는 , 부의 수가 12일 경우에는 를 그린다고 보여준 다음, 그림에 ‘한 표를 낭독하는 대로 한 획을 내려 굿고 네 번째 획을 그은 다음 다섯 번째 획은 네 획을 횡으로 관통하여 그으라’고 진술하고 있다.<sup>30)</sup> 또 임원을 선출할 때에는 전체 투표수(투표권이 있는 회원의 수), 투표에 참여한 수, 각 후보자들의 득표수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차례로 기록하고, 이 중에서 득표수가 많은 사람을 불러 임원으로 선정되었음을 선포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제5장 ‘동의를 속결하는 방법’은 우선동의(privileged motion)와 부대동의(subsidiary motion)의 다양한 예를 설명하고 있다. ‘즉결청(卽決請, incidental motion)’은 이미 결정된 결의안에 대해 다시 논의하자는 의견

30) 윤치호, 『의회통용규칙』, 황성신문사, 1908. 14쪽

이 있고 이에 대한 동의와 재청이 있으면 회장은 회원들의 의견을 더 이상 묻지 않고 가부를 물어 3분의 2의 가결(two thirds vote)을 얻으면 이를 통과시키는 방법이다. ‘파의청(罷議請, rescind)’은 동의와 재청을 거친 안건에 대해 파기하지는 의견이 있으면, 재청을 받지 않고 회장이 회원들의 가부를 물어 역시 3분의 2가 넘을 경우 안건을 파기하는 것이다. ‘철의청(撤議請, motion to withdraw)’은 어떤 동의를 논의하는 중이라도 시기가 적절하지 않아 자신의 동의를 철회하거나 다른 안으로 대체하고자 할 경우 회원들의 이견이 없으면 회장의 허락을 받아 철회 또는 개정 대체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존의청(存案請, lay on the table)’과 ‘정기연타청(定期延拖請, defer)’은 모두 의안을 보류거나 정지하는 결정을 하는 방법이다. 동의와 재청이 있으면 회장이 의견을 묻지 않고 회원들의 가부에 부쳐 가결로 결정되면 의안을 정지하는 점에서 모두 동일하다. 그러나 존의청은 언제 재론할 것인지 가부표결에 부친 결과에 따르고, 정기연타청은 정해진 시기 전이라도 재논의하지는 안건에 대한 동의와 재청이 있고 이에 대해 3분의 2의 가결이 있으면 다시 논의하고 그렇지 않으면 정해진 시기까지 기다린다는 점에서 다르다. ‘위임청(委任請, motion to commit)’은 회원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불가능한 안건일 경우 위원들에게 위임할 것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회의변』에서는 이와 대조적으로 이 내용을 간략하게 다루고 있다. ‘당일의 사사(仕事)를 바꾸는 방법’에서는 갑자기 당일의 안건을 바꾸거나 다음으로 연장하지는 의견이 있는 경우 참가 회원의 3분의 2가 찬성하면 이를 채택할 수 있고, ‘식목을 정지하는 방법’에서도 일시적으로 부레나 식목을 정지할 경우 역시 참가 회원의 3분의 2가 찬성하면 이를 채택할 수 있다고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다. 전자는 『의회통용규칙』의 ‘철의청’과 부분적으로 유사하고, 후자는 ‘존의청’과 유사한 면이 있다.

‘위원 천거법’에는 ‘특별위원(special committee)’, ‘상비위원(ordinary committee)’, ‘전회위원(全會委員, committee of the whole)’을 각각 천거

하는 방법이 있다. 특별위원은 ‘특별한 사무를 수시로 상량타변(商量妥辦)하는 임원’이고, 상비위원은 ‘일주간 또는 보름간의 기간을 정하여 직무를 담당’하며, 전회위원은 의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담당한다. 회원이 공천하거나 회장이 임의대로 선정하는 두 가지 방법이 세 가지 모두에 적용되며, 회원이 공천할 경우 위원장이 전회위원의 의견을 수합하여 회의 중에 보고하며, 의견 수합이 안 될 경우 다수의 의견을 보고한 후에 소수의 의견을 보고하여 회원들의 의결에 따라 채택을 결정한다. 위원장이 의견수합을 못해 분규가 일어날 경우 회장이 전회위원을 파산(罷散)시킬 수 있다. 즉시 해결할 사항이 많을 경우 위원수가 너무 많으면 좋지 않고, 해결할 사항들이 고찰을 요구하는 성격이 강할 경우에는 분규가 일어나지 않도록 좌우의 수를 균등하게 맞추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마지막 7장에서는 ‘규칙수지(規則須知)’, 즉 회의 진행 규칙을 설명하고 있다. 회의 진행 순서는 대략 회원들의 출석을 부르는 점명(点名, roll call), 지난 회의를 기록한 회의록 낭독(reading papers), 상비위원의 보고(report of ordinary committee) 및 특별위원의 보고(report of special committee), 미진한 사건에 대한 논의, 새로운 사건에 대한 논의, 폐회(closing meeting)의 순서로 진행한다. 특이한 점은 토론을 할 경우 다른 회원의 이름을 부르지 말고 ‘앗가 말흔 회원’이라 하든지 ‘혹은 달리 지명’을 하라는 대목과 ‘의안에 대해서만 가부를 논의할 뿐 다른 회원의 주의(主意)에 대해서는 평론하지 말라’는 지적이다. 이는 회의하는 과정에 사적 감정이 개입되어 자칫 갈등과 분쟁이 생길 여지를 차단하도록 경계하려는 것이다. 또한 의안을 제출하고자 하나 규칙에 해당 조항이 없을 경우 규칙을 잠시 정지하자는 의견이 있으면, 회장이 회원들에게 가부를 물어 3분의 2의 표를 획득할 경우 특청을 허락하는 ‘규칙잠지특청(規則暫止特請, suspension of rules)’, 논의 중에 폐회하기를 원하는 동의와 재청이 있으면 회원의 가부를 물어 폐회를 결정할 수 있는 ‘폐회청

(閉會請, calling a meeting)'도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회통용규칙』에 소개된 회의 규칙은 다소 복잡하다. 『의회통용규칙』이 1900년대와 1910년대에 지속적으로 재출간 또는 재수록되면서 당대 사회에 근대적 회의 규범이 정립되는 초석의 역할을 담당했지만, 한편으로 복잡한 절차를 고수했던 까닭에 독립투쟁기에 의회정치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의사(議事)를 위한 회의가 아니라 규칙을 논의하기 위한 규칙 토론회로 변질될 우려가 있으니,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서 ‘의회통용규칙’을 폐기하고 보다 간편하고 실용적인 회의 규칙을 만들자”<sup>31)</sup>는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이에 비해 『회의변』에 소개된 회의규칙은 비교적 간략하다. 이런 간략한 규칙은 「협성회규칙」이나 「독립협회 토론회규칙」에서 상당 부분 수용하여 활용했다.<sup>32)</sup>

이런 차이는 이질문화를 번역하는 방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질문화를 번역함에 있어 크게 직역과 의역의 방식이 있는데, 윤치호는 전자를 후쿠자와 유키치는 후자를 택했다. 번역의 방식은 곧 이질문화를 수용하는 번역자의 목적의식과 태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의역의 방식을 택했던 후쿠자와 유키치는 서구의 문화를 번역할 때 ‘일본의 풍토에 부응하여 원래의 뜻을 살리면서 인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옮겨도 무관하다’는 관점을 취했다.<sup>33)</sup> 그는 서구의 수용할 때에는 ‘일본이 직면하고 있는 과제가 무엇인지 물음을 먼저 던지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지적 도구로 서구의 사상을 번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관점에서 ‘서양 각국에는 인간의 모든 일을 공사를 묻는 집회를 거쳐 결정하는 풍속이 있으니 이를 처음 익히는 어려움에 비할 바 없으나 서양인도 사람이고 일본인도 사람인 까닭에 집회 담화의 체재를 훈련하면

31) 「국민대표회의에 대하여 (하)」, 『독립신문』, 1922.8.22. 14쪽

32) 이에 대해서는 「애국계몽기 연설과 토론의 수용과정」(『현대문학이론연구』제43집, 2010.12)에서 이미 상세하게 살펴보았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하고자 한다.

33) 마루야마 마사오, 김석근 역, 『문명론의 개략을 읽는다』, 문학동네, 2007. 53쪽

진진을 취할 수 있다'고 격려하며, 집회의 체재를 학습하는 일을 병사의 훈련에 비유하였다.<sup>34)</sup> 이런 그의 태도에 대해 '의식적으로 원전을 왜곡했다'는 비판과 동시에 '문명개화의 진전과 독립자존의 딜레마 속에서 외형의 문명을 받아들이는 조급함을 버리고 균형을 잡았다'는 평가가 공존한다.<sup>35)</sup>

원전을 충실하게 직역했던 윤치호 역시 문명개화의 진전과 독립자존이라는 딜레마 속에서 실현 가능한 개혁의 방법을 찾기 위해 고심했던 인물임에 틀림없다. 그는 '국가라 하는 것은 큰 사회인즉 사회에 유지한 사람은 만국에 통용하는 의회통용규칙을 불가불 알아야 한다'<sup>36)</sup>는 전제 아래, 당대 인민들이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의회규칙을 익힘으로써 최고의 문명국인 미국의 의회민주주의를 하루 빨리 실현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의회통용규칙』을 번역했던 것이다. 그러나 당시 인민들의 수준이나 사회상을 고려하지 않고 최대 문명국인 미국을 문명개화의 모델로 삼아 서구의 원전을 충실하게 직역했던 윤치호의 방식은, 일견 '문명개화론적 세계관을 일관되게 고집하여 문명 선진국의 지도, 더 나아가 지배를 적극 끌어들이는 비애국적 뜻이 내재되어 있었다'<sup>37)</sup>는 그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과 상통한다.

34) 福澤諭吉, 『會議弁』, 時事新報社 編, 『福澤全集』3卷, 1898. (대산문화사, 1986 인쇄), 615-616쪽

35) 마루야마 마사오, 김석근 역, 『문명론의 개략을 읽는다』, 문학동네, 2007. 52-119쪽

36) 이 구절은 『의회통용규칙』의 초판에는 없으나 1906년 『대한자강회월보』제4호(1906.10.25. 66쪽)에 재수록할 때 본문에 앞서 언급한 부분으로, 윤치호가 '대한자강회'의 회장으로 활동하며 『대한자강회월보』에도 깊이 관여한 점으로 미루어보아 윤치호의 의견이라고 추정된다.

37) 정용화, 『문명의 정치사상 : 유길준과 근대 한국』, 문학과지성사, 2004. 395-426쪽

## 4. 결 론

윤치호의 『의회통용규칙』은 국내 최초의 근대적 말하기 교육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성회와 독립협회를 결성하고 연설과 토론의 대중 교육에 앞장섰던 서재필의 그림자에 가려 전혀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근대적 말하기 형성과정에 대한 연구가 심도 있게 이루어지지 못한 학문적 취약성에 있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나아가 『의회통용규칙』을 중심으로 근대 초기에 회의 규범이 수용되고 사회역사적 맥락 속에서 회의 문화가 정착되는 과정, 이를 바탕으로 근대 의회가 정립되는 과정에 대해 고찰하고자 하는 거시적인 계획의 일환이다. 『의회통용규칙』에 대한 학문적 조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까닭에 본고에서는 우선 일차적으로 출간 배경과 『의회통용규칙』에 나타난 회의 규칙과 용어가 번역된 양상을 살펴해보았다.

『의회통용규칙』은 의회설립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했던 1898년 4월에 출간되었다. 윤치호가 의회설립운동에 매진했던 까닭은 미국에서 직접 체험했던 의회민주주의를 조선의 현실 속에서 제도적으로 실현하려는데 있었다. 의회설립운동은 중추원에 의회 기능을 부여하여 인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의회민주주의를 실현함으로써, 당시 위기에 빠진 국가를 구하고자 했던 일련의 시민운동이다. 윤치호를 비롯한 독립협회가 주축이 되어 국정개혁과 의회 설치를 촉구하는 상소문도 올리고, 만민공동회를 결성하여 대대적인 시위도 벌였다. 그러나 1898년 12월에 보수 세력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민회 해산 명령이 발포됨에 따라 의회설립운동은 와해되었다. 비록 의회설립운동은 정치적 이유에서 좌절되었지만, 『의회통용규칙』은 이후 다양한 매체에서 재수록과 재생산되는 과정을 통해 우리 사회에 회의 규범이 뿌리내리는 기초를 마련했고, 아울러 1907년 신민회를 중심으로 군주제 폐지와 공화국 건설을

통한 국권회복운동이 펼쳐지는 발판이 되었고, 독립투쟁기에 전개됐던 의회정치의 근간을 형성했다는 의의를 지닌다.

윤치호의 『의회통용규칙』은 전 세계적으로 회의 규칙을 보급하는데 크게 공헌한 *Pocket manual of rules of order for Deliberative Assemblies* 중 주로 2장의 내용을 초역한 것으로, 회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방법,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 알아야 할 세부적인 규칙과 규정을 총 7장으로 나누어 담고 있다. ‘만국에 통용되는 의회 규칙’이라는 서구의 원전을 충실하게 번역하는데 치중했던 까닭에 『의회통용규칙』에 소개된 회의 규칙은 회의 규범이 낯설었던 당시 우리에게 다소 복잡한 양상을 띠었다. 그리하여 독립투쟁기 의회정치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윤치호에서 비롯된 ‘의회통용규칙’을 폐기하고 보다 간편하고 실용적인 회의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는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그러나 일본에 의해 번역된 근대(translated modernity)를 통해 우회적으로 서구의 문명을 도입하는 중역의 방식을 취했던 당대 대부분의 지식인들과 달리 윤치호는 서구의 원전을 직접 수용하는 직역의 방식을 취했다는 점에서 독보적이다. 직역을 택했던 윤치호와 달리 후쿠자와 유키치는 일본의 풍토에 부응하여 서구의 원전이 지닌 뜻을 살리면서도 당시 인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의식적인 의역의 방식을 택했다는 점에서 대조를 이룬다. 그러나 윤치호 역시 후쿠자와 유키치와 마찬가지로 문명개화의 진전과 독립자존이라는 근대 초기의 딜레마 속에서 실현 가능한 개혁의 방법을 찾기 위해 고심했던 근대 지식인이었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후쿠자와 유키치의 『회의변』에 실린 회의 용어를 빌어다 쓰는 손쉬운 방식을 지양하고 우리 어법에 맞게 회의 용어를 개발하려 고심했던 것도 이런 맥락에 닿아 있다. 일본과 달리 현실적으로 내적 혁명이 불가능했던 당시 조선의 현실 속에서 차선책으로 외세에 기대 개혁을 도모했던 윤치호의 행적은 보다 넓은 맥락에서 재조명되어야 할 것이다.

의회설립운동의 일환으로 출간되었던 『의회통용규칙』은 이후 『대한자강회월보』(1906)를 비롯하여 『사회승람』(1908)이나 『경남일보』(1910), 『연설급식사법(演說及式辭法)』(1920) 등의 잡지와 신문, 말하기 교육서에 지속적으로 재수록되면서 국민들에게 회의 규범을 널리 보급·확산시키는 역할을 담당했다. 이 과정에서 윤치호의 『의회통용규칙』은 새롭게 각색되고 변주(變奏)되었다. 또한 1919년 독립운동을 기점으로 의회정치가 불붙으면서 회의규범에 대한 논쟁의 한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 이에 대한 포괄적 고찰이 이루어져야 근대 초기 회의 규범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의회통용규칙』이 지니는 의미가 제대로 규명될 것이다. 이에 대한 논의는 후속 작업으로 미루고자 한다.

## 참고문헌

### 1) 기본 자료

『독립신문』, 『대한미일신보』, 『承政院日記』, 『대한자강회월보』, 『태극학보』, 『의회통용규칙』(황성신문사, 1908), 『日記』, 『會議弁』(時事新報社 編, 『福澤全集』3卷, 1898 (대산문화사, 1986))

### 2) 참고 자료

- 김동면, 「협성회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0
- 나리타 류이치 외, 연구공간수유+너머 ‘일본근대와 젠더 세미나팀 역, 『근대지의 성립』, 소명출판, 2011
- 마루야마 마사오 외, 임성모 역, 『번역과 일본의 근대』, 이산, 2000
- 마루야마 마사오, 김석근 역, 『문명론의 개락을 읽는다』, 문학동네, 2007
- 신용하, 『독립협회연구』, 일조각, 1976
- 야나부 아키라, 서혜영 역, 『번역어성립사정』, 일빛, 2003
- 유영렬, 『개화기의 윤치호 연구』, 한길사, 1985
- 유영렬, 『애국계몽운동 I -정치사회운동』,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7
- 윤치호, 박정신 역, 『국역 윤치호일기 1』, 연세대학교출판부, 2001
- 이방원, 『한말 정치변동과 증추원』, 혜안, 2010
- 이병화, 「한국근대의회회의 기원과 발달에 관한 연구」, 『부산여대 논문집』 26집, 1988. 133-172쪽
- 이정옥, 「애국계몽기 연설과 토론의 수용과정」, 『현대문학이론연구』제43집, 2010.12. 175-197쪽
- 이황직, 『독립협회, 토론공화국을 꿈꾸다』, 프로네시스, 2007
- 임형택 외, 『흔들리는 언어들』,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8

- 전영우, 『한국 근대토론의 사적연구』, 일지사, 1991
- 전택부, 『人間 申興雨』, 대한기독교서회, 1971
- 정명숙, 「서재필의 화법지도와 실천에 관한 연구」, 한국외대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9. 8
- 정용화, 『문명의 정치사상:유길준과 근대 한국』 문학과지성사, 2004
- 한기형 외, 『근대어·근대매체·근대문학』,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6
- 허동연, 「개화기 윤치호의 해외체험과 문화수용」, 『한국문화연구』11집, 2006. 117-155쪽
- 松崎欣一, 『三田演說會と慶應義塾系演說會』福澤研究センター叢書』, 慶應義塾大學出版株式會社, 1984
- Robert, M. Henry, *Robert's Rules of Order Revised*, Chicago : Scott, Foresman and Co. 1951

<Abstract>

The Process of Accepting Meeting Norms in  
the Early Modern Period (1)

– Concentrated on *General Rules for the Assembly*

Lee, Jung-Oak\*

Yun Chi-ho's *General Rules for the Assembly* is the first modern educational book for speaking in Korea. Nevertheless, it has not attracted any interest due to the great influence of Seo Jae-pil, who had founded Hyeopseonghoe and Dongniphyeophoe, and led the public education of speech and debate. As academic clarification of *General Rules for the Assembly* has not been fulfilled at all as such, this paper first examines the background of its publication and the aspects of the translation of the meeting rules and terms in *General Rules for the Assembly*.

*General Rules for the Assembly* was published in April, 1898 when the movement of assembly foundation began to unfold in earnest. *General Rules for the Assembly* has significance in that it later provided a basis for making meeting norms rooted in Korean society via its repetitive publications in various media and reproduction, furthermore, it was a foothold for the development of the movement of the national sovereignty restoring through the abolition of the monarchial system and the foundation of a republic concentrated around Sinmihoe in 1907, and it formed a basis for the parliamentarism in the period of independence struggle.

---

\* Sookmyung General Education Institute

Greatly contributed to the worldwide distribution of meeting rules, Yun Chi-ho's *General Rules for the Assembly* contains methods to organize and operate an assembly and detailed rules and provisions to know for presiding a meeting in 7 chapters in total. Different from most of the intellectuals at that time who took the approach of dual translation that indirectly introduced the Western civilization via the modernity translated by Japan, Yun Chi-ho was unique in his way of direct translation in which he directly accommodated original Western texts. Yun, who preferred direct translation, contrasts with Fujujawa Yukichi, to the effect that the latter figure took the approach of intentional paraphrasing in order to make people easily understand while the meanings of original Western texts remained in accordance with the climate of Japan.

Later, *General Rules for the Assembly* was repetitively published in magazines, newspapers, and educational books of speech in the 1910s to play an important role in distributing and spreading meeting norms to the people. In this course, *General Rules for the Assembly* was freshly adapted and varied, and was in the middle of the debate on meeting norms as the parliamentarism attracted much interest from the beginning of the independence movement in 1919. Some more specific discussion about this is left for future research.

Key Words : modern speech, meeting norms, meeting rule, general rules for the assembly, movement of assembly foundation, parliamentary democracy, public speech

- 논문접수 : 2011년 11월 10일
- 심사완료 : 2011년 12월 8일
- 게재확정 : 2011년 12월 12일